

# 자산관리위탁 변경계약서

주식회사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前.주식회사 투게더한라시그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, 이하 “위탁자”)와 에이치엘리츠운용 주식회사(前.주식회사 한라리츠운용, 이하 “수탁자”)간 2021년 9월 29일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(이하 “원계약”)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산관리위탁 변경계약(이하 “본 변경계약”)을 체결한다.

## 전문

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는 원계약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,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본 변경계약을 체결한다.

## 다음

### 제1조 [용어의 정의]

원계약에서 정의된 용어는 본 변경계약에서 달리 정하거나 문맥상 협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변경계약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### 제2조 [변경내용]

원계약 별지1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.

변경 전	변경 후
<p>별지1. 수수료</p> <p>1. 자산관리수수료</p> <p>4) 지급시기: 당기 자산관리수수료는 해당 결산기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일 이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.</p>	<p>별지1. 수수료</p> <p>1. 자산관리수수료</p> <p>4) 지급시기: 당기 자산관리수수료는 해당 결산기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일 이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.</p> <p><u>단, 제7결산기부터 청산종결 등기일까지의 자산관리수수료 ₩123,735,439(부가 가치세 별도)은 수탁자의 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.</u></p>

### 제3조 [원계약과의 관계]

본 계약은 원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.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 원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. 본 계약의 내용과 원계약의 내용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.

[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은 다음 페이지에]

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는 본 변경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변경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4년 4월 26일

“위탁자”

주식회사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
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, 2802호(삼성동, 트레이드타워)

청산인 김 동 기



“수탁자”

에이치엘리츠운용 주식회사  
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, 2802호(삼성동, 트레이드타워)

대표이사 조 성 진

